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학대범죄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죄 포함〉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62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아동학대범죄	6
2. ‘자녀살해 후 자살’ 연도별 발생 현황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1. 14.
3. 회 부 일: 2025.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치사 및 그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살해·치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등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 등의 절차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동반자살’ 등으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살해하기 직전에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에 ‘「형법」상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¹⁾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해당 범죄를 검사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심판 청구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 하.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제250조제1항, 제252조 및 제25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55조(제250조제1항 및 제253조의 죄에만 해

1)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개정안
4의2. ~ 11. (생략)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 행위자가 제4조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당한다)의 죄 4의2. ~ 11. (현행과 같음)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 -----제2조제4호거목 중 「형법」 제254조(제250조제1항, 제252조 및 제25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55조(제250조제1항 및 제25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4조제3항-----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²⁾, 제5조(아동학대중상해)³⁾, 제6조(상습범)⁴⁾의

- 2)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3)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4)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죄와 「형법」의 상해, 폭행, 유기 등의 죄, 「아동복지법」의 아동 매매 등의 죄로 정의하고 있음⁵⁾.

- 그런데 경제적 문제, 양육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⁶⁾하고 있어 현행 아동 보호 관련 체계의 정비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⁷⁾

□ 이에 개정안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이른바 부모가 ‘자녀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사건을 명백히 아동학대범죄로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상 강화된 처벌 및 보호처분 등 특례를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⁸⁾

5) [참고자료 1]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아동학대범죄

6) [참고자료 2] ‘자녀살해 후 자살’ 연도별 발생 현황

7) 이른바 ‘동반자살’ 등으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살해하기 직전에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개정안의 제안이유 중).

8) **아동학대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으로 하며, 아동학대범죄 역시 보호자에 의한 폭행, 상해, 성폭력 등 피해아동 보호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절차적 특례를 적용하는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⁹⁾

○ 이러한 점에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인죄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이미 사망하여 보호 절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¹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아동학대 범죄에 추가하더라도 실질적인 제도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다만,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인미수죄는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¹¹⁾, 법 적용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개정안과 같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인죄 및 아동살인미수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할 것인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 범위, 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9) 아동학대범죄의 유형 중 아동학대살해·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경우에만 별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10)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 학대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학대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대립함. 형사실무에서도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 듯 함. 전문가조사에는 자녀살해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었음(살아남은 아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 2025.9.24., p25)

[참고자료 1]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아동학대범죄

제2조(정의)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참고자료 2] ‘자녀살해 후 자살’ 연도별 발생 현황

연도	사건 수	피해아동 수	주가해자 수	주요 사인	전체 아동 사망사건에서의 비율
2019	7건	9명	7명	수면 중 교살	21.4%
2020	12건	12명	12명	질식, 자살	29.3%
2021	13건	14명	13명	질식, 자살	38.9%
2022	14건	14명	15명	질식, 중독	29.2%
2023	14건	23명	14명	질식, 추락	53.5%
2024	5건	7명	6명	일산화탄소 중독, 교살	25.9%
계	65건	79명	67명		

자료: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연차보고서 및 살아남은 아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 2025.9.24., p27)

문 의 처

02-6788-5051